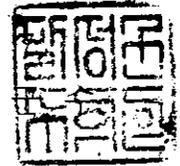


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 군세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3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
제출자 : 달성



□ 제안이유

2003.2.18일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치 및 대구광역시세감면 동의안과 형평을 맞추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대구지하철참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면제
- 피해자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면제

□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9조의2 (화재 등으로 인한 감면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 군세감면 동의안

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도록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감면대상

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(피해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 및 피해업체

2. 세목별 감면내용

가. 균등할 주민세

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(배우자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거가족 포함) 및 피해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한다.

나. 지방교육세

피해자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면제한다.

부 칙

① (적용례) 이 규정은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2003. 2. 18일 부터 적용한다.